<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규정 변경-

2017년	2018년
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Ⅱ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	(2)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나.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좌동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좌동